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 보

제 591호 2024. 1. 11 (목)

입법예고

- | | | |
|------------|--------------------------------------|-------|
| 제2024-140호 |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6972 |
| 제2024-154호 | 김해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6984 |

고 시

- | | | |
|-----------|------------------------------------|-------|
| 제2024-8호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98호선, 소로2-111호선)사업 | 36995 |
|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제2024-9호 | 생림면 안금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36998 |
| | 기본계획 수립 고시 | |
| 제2024-12호 |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37000 |
| 제2024-14호 |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회원, 대중)】사업 | 37003 |
| |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공 고

- | | | |
|-----------|-------------------------|-------|
| 제2024-93호 |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 37005 |
|-----------|-------------------------|-------|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11. ~ 1. 31. (20일간)

3.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7.20. 개정, 2023.7.21.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관련 조례를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조문 신설(안 제4조의2)
-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범위 신설(안 제7조)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문 등 개정 (안 제1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주소: (우)50924 김해시 부원동 553-1, 김해시청 제2청사 하수과
(전화: 055-330-3374, 팩스: 055-722-4629, e메일: ttljongho@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메일, 직접 방문 등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하수과 개인하수팀(☎ 055-330-337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비 고

- 기타 참고사항 :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4. 1. .
제출자 : 김해시장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7.20. 개정, 2023.7.21.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관련 조례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조문 신설(안 제4조의2)
-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범위 신설(안 제7조)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문 등 개정 (안 제1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임
- 예산관련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부서협의
 - 규제개혁 심사(법무담당관)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2024. 1월
- 조례 · 규칙심의회 : 2024. 2월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따른”을 “의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 · 관리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용자의 편의를”을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시장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단독 건축물로 된 공중화장실. 다만, 이동식 등 건축물 대장 등록이 안 된 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 ·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 · 관리”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 · 사진 · 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제1항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인의 교육)”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1호 중 “청소를 하여야 한다”를 “청소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화장실의 경우에는”을 “공중화장실의 경우”로, “도색을 하여야 한다”를 “도색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것”으로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등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 앞에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화장실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제15조제1항제3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설치하고”를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제16조 앞에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라 신고한”을 “따른 신고”로, “있는 날”을 “발생한 날로”로, “적용일”을 “적용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모	부지 (m ²)	화장실 면적 (m ²)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u>의한</u>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생 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 관리하는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u>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u>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② <u>공중화장실등을 설치 · 관리하는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신 설)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의2 (신 설)</u>	<p><u>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u> <u>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u> <u>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u> <u>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u></p> <p><u>1. 시장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u> <u>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u> <u>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이</u> <u>설치한 단독 건축물로 된 공중화</u> <u>장실. 다만, 이동식 등 건축물 대</u> <u>장 등록이 안 된 화장실은 제외</u> <u>한다.</u></p> <p><u>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u> <u>정하는 공중화장실등</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u> <u>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u> <u>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u> <u>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u> <u>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u> <u>지 않을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u> <u>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u> <u>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u> <u>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u></p>
<u>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 · 관리</u> <p><u>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u> <u>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u> <u>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u> <u>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u> <u>각 호와 같다.</u></p> <p><u>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u> <u>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u> <u>록 하여야 한다.</u></p> <p><u>2. 대 · 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u> <u>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u> <u>하여야 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u> <u>용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u>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u> <u>중화장실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u> <u>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u> <u>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u></p> <p><u>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u> <u>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u> <u>록 할 것</u></p> <p><u>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u> <u>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u> <u>것</u></p>

현 행	개 정 안
<p>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4.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p>	<p>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p>
<p>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 · 그림 · 사진 ·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p>	<p>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 · 사진 · 화분 등을 설치할 것</p>
<p>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p>	<p>5. <삭 제></p>
<p>7.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p>	<p>6. <삭 제></p>
<p>② (삭제 2008.1.14.)</p> <p>제6조 (위탁관리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6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③ <신 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p>
제8조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p>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 관리)</p> <p>1. 1일 3회 이상 <u>청소를 하여야 한다.</u></p> <p>2. 대 ·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막힘 방 지를 위한 세척작업 및 해충발생 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 색이 필요한 <u>화장실의 경우에는</u> 연 1회 이상 <u>도색을 하여야 한다.</u></p> <p>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하여 주 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 관리)</p> <p>1. 1일 3회 이상 <u>청소할 것</u></p> <p>2. 대 ·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u>소독을 실시할 것</u></p> <p>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u>공중화장실의 경우</u> 연 1회 이상 <u>도색할 것</u></p> <p>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u>실시할 것</u></p>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u>공중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 · 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u>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u>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등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등의 유지 · 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u>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 운영	<삭 제>
제11조 (생 략)	제11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u> <p>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p>	<u>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 운영)</u> <p>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제13조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u>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 · 관리</u>	<u><삭 제></u>
제14조 (생 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u>제15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 · 관리)</u> <p>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u>감안한</u> 적합한 수의 남 · 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u>제15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 · 관리)</u>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u>고려하여</u>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현 행	개 정 안
<p>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p> <p>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p> <p>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p> <p>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p> <p>② (현행과 같음)</p> <p>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p> <p>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p> <p>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p> <p>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할 것</p> <p>③ (현행과 같음)</p>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삭 제>
<p>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김해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이하 “시 · 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법률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제안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4조의2)

나. 개정법률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거점사업과 그 외의 사업이 모두 포함되므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시 ·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최소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38조의2)

다. 개정법률에 따라 조문 삭제(안 제39조제3항 및 제4항)

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을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함
(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우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건축과(건축행정팀)
(전화:055-330-3655, FAX:055-722-1030)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건축과 담당자 문은정 주무관 (☎055-330-36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김해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규칙안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김해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김 해 시 장

1. 제안이유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3.10.19.)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법률에 따라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제안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4조의2)

○ 제정법률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거점사업과 그 외의 사업이 모두 포함되므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최소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38조의2)

○ 제정법률에 따라 조문 삭제(안 제39조제3항 및 제4항)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을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제48조, 제49조의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의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 입법예고 : 2024. 1. . ~ (20일 이상)

○ 조례·규칙 심의회 : 2024. 2. .

김해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을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을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로 한다.

제5조 제1항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조 제1항”을 “법 제4조 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영 제4조 제1항 제4호”를 “영 제4조 제1항 제7호”로 한다.

제8조 “영 제6조 제6호”를 “영 제6조 제7호”로 한다.

제18조 “법 제22조 제3항 제8호”를 “법 제22조 제6항 제8호”로 한다.

제24조 “영 제26조 제11호”를 “영 제26조 제16호”로 한다.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1개소 이상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예정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2의 조문 제목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 “거점사업 시행자”를 “사업 시행자”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41조 조문 제목을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특례”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2제3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법 제49조2제5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43조 “법 제55조제5항”을 법 “제55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2.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 ----- ----- <u>「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 <u>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제18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3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제24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7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

-----.

제24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6호-----

-----.

1. · 2.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1개소 이상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 예정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34조의2 (생략)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영 제4
0조의2제4항에 따라 거점사업 시행
자가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가로
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
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
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
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
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
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 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 설>

제39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①·②(생략)

③ 법 제49조제7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시장은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계획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의3 (현행 제34조의2와 같음)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서의 통합 시행) ① 법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
의2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9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①·②(현행과 같음)

<삭 제>

④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1조(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등 건설비용) (생략)

<신 설>

〈설설〉

제43조(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삭 제〉

제41조(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43조(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

----- 법 제55조 제7항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98호선, 소로2-11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98호선, 소로2-11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삼문동 66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98호선, 소로2-111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m^2)	
중로3-98호선	371	10~14	371	10~14	4,616.8	김해시 고시 제2022-11호 (2022.1.14.)
소로2-111호선	145	8~9	23	8~9	66.8	경상남도 고시 제1995-206호 (1995.10.1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박슬기
- 주 소 :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대청동, 리더스빌딩)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48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 신청사유

- 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확충
-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6)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 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삼문	586-2	도	198.6	198.6	김해시					
2	"	696-21	공	29	29	김해시					
3	"	653-14	답	209	209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4	"	653-2	답	195	195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5	"	660-1	대	447	447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6	"	660-7	답	12	12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7	"	662-7	답	117	117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8	"	662-6	도	19	19	국토교통부					
9	"	667-5	도	3	3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0	무계	549-2	도	1	1	국토교통부					
11	삼문	1193-9	도	61	61	환경부					
12	"	429-1	도	16	16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3	"	429-4	도	3	3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14	"	429-14	도	2	2	김해시					
15	무계	503-1	도	11	11	국토교통부					
16	무계	544-1	도	2	2	박**	김해시 관동로27번길				
17	삼문	429-13	답	150	150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18	무계	543-1	도	149	149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19	삼문	426-1	전	114	114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20	삼문	427-2	전	237	237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21	무계	539-2	도	17	17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2	삼문	423-4	전	10	10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3	"	422-4	전	1,338	35	주식회사 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	"	428-3	전	150	150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25	"	429-10	답	65	65	주식회사 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 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 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6	"	421-8	구	34	34	한국농어촌공사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27	"	429-19	답	82	82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28	"	432-2	전	376	376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29	"	447-2	대	269	269	주식회사 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	448-2	대	271	271	주식회사 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	"	463-1	전	95	95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32	"	1193-14	도	47	47	환경부					
33	"	462-4	도	14	14	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4	"	462-3	대	57	57	사회복지법인 다*****	김해시 장유면 삼문로				
35	"	461-4	대	295	295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36	"	460-4	전	331	331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37	삼문	1193-15	도	48	48	환경부					
38	"	464-1	대	42	42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39	"	490-10	전	62	62	김**	김해군 장유면 산문리				
40	"	489	대	78	78	주식회사 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	"	588-2	도	136.2	136.2	김해시					
42	"	465	대	51	51	주식회사 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	"	466-4	전	72	72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44	"	588-1	도	10	10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45	"	486	전	24	24	장유삼문지역 주택조합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46	"	586-3	도	36.8	36.8	김해시					
합계				5,986.6	4,683.6						

생림면 안금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김해시 생림면 안금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1.

김 해 시 장

1. 사업명 : 생림면 안금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안금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사업비 : 1,417백만원 ※자부담 별도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금마을 일원
 - 나. 사업범위 : 안금마을 일원
 - 다. 주요사업
 - 생활,안전,위생 - 급경사구간 및 마을안길 정비, 소방도로 및 위험교차로 정비 등
 - 주택 정비 - 슬레이트지붕 철거 17호 및 개량 10호, 집수리 17호, 빙집 철거 2호
 - 경관·환경개선 - 배수로정비, 안전휀스 설치, 노후담장정비 등
 - 휴먼케어 - 우리마을 경관가꾸기, 안금 문화 활력소, 실버밴드 교육 및 활성화 등
 - 주민역량강화 -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산딸기 수입사업 개발 등
5. 사업시행자 : 김해시장
6. 사업예정기간 : 2022년 ~ 2025년
7. 관계도서의 비치
 - 관계도서는 김해시 건설과(☎055-330-688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5,500	1,179							
안금마을													
1	나전리	201	3	전	353	195	장**	김해시 인제로 167 15동 905호	서**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694번길 32-3	근저당권	채무자	
									김해시 중앙 사마을금고	499번길 11-2		근저당 권자	
									김해시 중앙 사마을금고	499번길 11-2	지상권		
									장**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694번길 32-3	근저당권	채무자	
									우**	양산시 불금읍 사실로 116 605동 223호		근저당 권자	
									서**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694번길 32-3	근저당권	채무자	
2	나전리	201	17	전	401	252	장**	김해시 인제로 167 15동 905호	김해시 중앙 사마을금고	499번길 11-2		근저당 권자	
									김해시 중앙 사마을금고	499번길 11-2	지상권		
									장**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694번길 32-3	근저당권	채무자	
									우**	양산시 불금읍 사실로 116 605동 223호		근저당 권자	
									서**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694번길 32-3		채무자	
3	나전리	205	1	답	3,174	617	한**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434					
4	나전리	205	6	답	1,169	57	한**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434					
5	나전리	226		임	403	58	청주한씨 문정공파 안금종종회 대표 한**	합천군 청덕면 초곡길 195-68					

김해시 고시 제2024-12호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김 해 시 장

1.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조서 : 붙임
2. 실효일자 : 2024. 01. 15.
3.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4. 실효 및 지형도면 : 생략(김해시 도시계획과 비치)
5.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 055-330-35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용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조서

도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광로	2	2-1	50	주간선 도로	830	광로3-2-1	광로3-2-1	일반 도로	-	2004.1.15	실효
폐지	중로	1	5	20	보조 간선 도로	471	중1-6	원지리 707-1	일반 도로	-	2004.1.15	실효
폐지	중로	1	6	20	보조 간선 도로	423	중1-5	원지리 928	일반 도로	-	2004.1.15	실효
폐지	중로	1	7	20	보조 간선 도로	883	내삼리 633	내삼리 1347	일반 도로	-	2004.1.15	실효
기정	중로	1	8	20	보조 간선 도로	896	대1-1-6	소2-50	일반 도로	-	2004.1.15	
변경	중로	1	8	20	집산 도로	186	대1-1-6	소3-53	일반 도로	-	2004.1.15	미집행구간 실효
변경	중로	3	14	12	집산 도로	443	내삼리 1170-1	소2-50	일반 도로	-	2004.1.15	
변경	소로	3	53	6	집산 도로	109	중1-8	내삼리 937-1	일반 도로	-	2004.1.15	
폐지	소로	2	49	8	국지 도로	164	소2-71	중1-7	일반 도로	-	2004.1.15	실효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6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소로 1-68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소로 1-73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74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중로 1-8호선	중로 1-8호선	■ 미집행구간(연장) 실효 - 폭원 : 20m - 연장 : 896m ⇒ 186m - 면적 : 17,878m ² ⇒ 3,781m ²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일부 구간에 대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미시행구간에 대하여 폐지
	중로 3-14호선	■ 미집행구간(폭원,연장) 실효 - 폭원 : 20m ⇒ 12m - 연장 : 896m ⇒ 443m - 면적 : 17,878m ² ⇒ 5,310m ²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일부 구간에 대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미시행구간에 대하여 폐지
	소로 3-53호선	■ 미집행구간(폭원,연장) 실효 - 폭원 : 20m ⇒ 6m - 연장 : 896m ⇒ 109m - 면적 : 17,878m ² ⇒ 713m ²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일부 구간에 대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미시행구간에 대하여 폐지
소로 2-234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 학교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	학교	초등학교	진례면 시례리 440-2 일원	9,770	감)9,770	-	2004.1.15	실효
폐지	5	학교	초등학교	주촌면 원지리 420 일원	9,460	감)9,460	-	2004.1.15	실효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학교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5	학교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김해시 고시 제2024-14호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회원,대중)】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회원,대중))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1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회원,대중))사업
- 사업의 명칭 : 가야골프장(회원, 대중) 조성 사업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변경)

가. 총 팔 표 (변경)

시 설 명	회원 골프장 면적(m ²)	대중 골프장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골프코스시설	354,965	95,359	95,359	
건축시설	283	1,118	1,294	증)176
부대시설	36,482	9,592	9,416	감)176
녹지시설	조성 녹지	433,843	56,021	56,021
	보전 녹지	328,262	2,683	2,683
	소계	762,105	58,704	58,704
계	1,153,835	164,773	164,773	

나. 골프 코스시설 조서 (변경없음)

다. 건축시설 조서 (변경)

시설명	회원 골프장 면적 (m ²)	대중 골프장 면적 (m ²)		비고
		기정	변경	
클럽하우스	-	784	784	
주차차량보관소	-	334	510	증)176
티하우스	195	-	-	
관리동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	-	
경비실	88	-	-	
계	283	1,118	1,294	증)176

라. 부대시설 조서 (변경)

시설명	회원 골프장 면적(m ²)	대중 골프장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주차장	-	2,524	2,348	감)176
연습그린	-	-	-	
진입도로	16,400	-	-	
관리도로	20,082	7,068	7,068	
배수지	-	-	-	
오수펌프실	-	-	-	
전기변전실	-	-	-	
자가주유소	-	-	-	
계	36,482	9,592	9,416	감)176

마. 녹지시설 조서 (변경없음)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가야개발(주) 대표 김영섭

○ 주소 : 경남 김해시 인제로 502(삼방동 산1번지)

5. 사업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12. 31. (변경없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 생략 (변경없음)

7. 실시계획 변경 사유

○ 대중골프장내 노후화된 주차차량(카트) 보관소의 증축을 통한 부족한 차량 주차공간 확보와 안전하고 원활한 카트 보관 공간 확보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6)비치】

김해시 공고 제2024-93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김해시장

1. 2023년 4분기 임대차계약(임대조건) 신고 현황

임대시작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20231230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번길 * ***호 (관동동)	5,000,000	350,000
20231127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 가동 ***실 (한림면 안하리)	1,000,000	500,000
20231128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실 (내동)	1,000,000	240,000
2023110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 (생림면 생철리)	50,000,000	250,000
20231106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실	3,000,000	360,000
20231010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 ***실 (삼방동)	1,000,000	300,000
20231105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번길 *-* ***호(구산동)	10,000,000	250,000
20231021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50,000
20231013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실 (내동)	3,000,000	350,000
20231010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실 (내동)	0	300,000
20231026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번길 ** ***호 (내동)	3,000,000	330,000
20231027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번길 ***-* ***실 (생림면 생철리)	20,000,000	0
20231003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번길 ** ***호 (삼계동)	5,000,000	490,000
20231001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번길 ** ***호 (내동)	2,000,000	330,000
20231001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번길 ** ***호 (내동)	2,000,000	330,000
2023120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 가동 ***실 (한림면 안하리)	3,000,000	250,000
20231107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실 (부원동)	45,000,000	115,000
2023111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실 (부원동)	35,000,000	60,000
20231028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실 (부원동)	3,000,000	300,000
2023101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실 (부원동)	15,000,000	244,000
20231025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실 (부원동)	20,000,000	253,000
20231016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호 (외동)	5,000,000	470,000
20231019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A동 ***호 (외동, 신영아트빌)	0	500,000
20231229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 ***호실 (주촌면 천곡리)	10,000,000	500,000
20231024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실 (안동)	20,000,000	238,000
2023102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번길 ** *층 ***실	500,000	250,000
2023122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번길 ** *층 ***실	500,000	250,000
2023122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번길 ** *층 ***실	500,000	250,000
20231126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 그랜드하우스 ***실 (진영읍 본산리)	3,000,000	310,000
20231124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석봉마을 부영아파트	66,150,000	0
20231022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호실 (부원동)	5,000,000	360,000
20231003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호실 (부원동)	5,000,000	380,000
20231218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호실 (부원동)	5,000,000	400,000

2023102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5,000,000	395,000
2023102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5,000,000	365,000
20231106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5,000,000	450,000
2023100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10,000,000	380,000
2023100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10,000,000	400,000
2023101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5,000,000	395,000
2023100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5,000,000	430,000
20231008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5,000,000	345,000
2023102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5,000,000	380,000
2023111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5,000,000	450,000
2023112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10,000,000	345,000
2023111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5,000,000	415,000
2023101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5,000,000	450,000
2023102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10,000,000	380,000
20231202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번길 * ***호 (신문동, SG이너스)	2,900,000	270,000
20231120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 ***동 ***호 (외동, 한국*차아파트)	121,000,000	0
20231130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 ***동 ***호 (외동, 한국*차아파트)	119,000,000	0
2023111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 제***동 ***호 (외동, 한국*차아파트)	93,000,000	0
20231121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 ***동 ***호 (외동, 한국*차아파트)	130,000,000	0
20231115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호실 (부원동)	10,000,000	800,000
20231009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 ***실 (동상동)	2,000,000	290,000
2023102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 ***호 (삼계동)	5,000,000	494,000
20231103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 ***호 (외동)	5,000,000	380,000
20231126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 ***실 (동상동)	5,000,000	460,000
2023110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127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02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동 ***호 (구산동, 구산 이진캐슬빌*단지아파트)	219,000,000	0
2023113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73,000,000	349,000
2023112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 ***실 (동상동)	2,000,000	300,000
2023121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12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22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20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10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93,000,000	296,000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2023122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020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번길 **-** ****호 (삼방동)	17,000,000	459,000
20231123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 IS PLAZA 오피스텔동 ****호 (부원동)	3,000,000	391,000
2023110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가동 ***호 (봉황동, 새회현아파트)	5,000,000	300,000
20231121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00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229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117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1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00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02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13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211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13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204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11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204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004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108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73,000,000	94,000
20231017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 ***실 (동상동)	5,000,000	350,000
20231009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 IS PLAZA 오피스텔동 ***호 (부원동)	7,000,000	593,000
2023101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 ***호 (외동)	5,000,000	390,000
2023112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 IS PLAZA 오피스텔동 ****호 (부원동)	3,000,000	387,000
20231002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번길 ** ***호(전하동)	10,000,000	450,000
20231001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 IS PLAZA 오피스텔동 ****호 (부원동)	5,000,000	400,000
20231221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60,000,000	60,000
20231027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번길 * ***실 (대성동)	2,000,000	280,000
20231112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 ***실 (동상동)	0	320,000
20231220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번길 **-* ***동 ****호 (구산동, 김해구산*주공아파트)	1,000,000	420,000
20231201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뜨란채아파트)	17,000,000	170,000
20231115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로 ** ***동 ***호	20,000,000	574,000
20231008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50,000,000	204,300
20231125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10,000,000	337,800
20231214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5,000,000	353,900
20231006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실 (외동)	2,000,000	294,000

20231216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50,000,000	143,500
20231222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010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15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12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26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73,000,000	94,000
20231205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22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112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73,000,000	94,000
20231121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22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01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01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124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127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53,000,000	403,000
20231110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53,000,000	403,000
20231010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204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22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21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21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08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14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07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1215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221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이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1024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40,000,000	218,600
20231222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40,000,000	173,800
20231120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10,000,000	334,900
20231216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10,000,000	350,000
2023103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 ***실 (동상동, 가야캐슬)	50,000,000	80,000
2023111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 ***실 (동상동, 가야캐슬)	47,000,000	100,000
20231122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호 (삼정동, 가야일동빌라)	70,000,000	0
20231114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 IS PLAZA 오피스텔동 ****호	0	460,000

	(부원동)		
20231201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번길 ** ***실 (삼방동)	500,000	250,000
20231201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번길 ** ***실 (삼방동)	1,000,000	280,000
20231120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 ***동 ***호 (외동, 한국*차아파트)	10,000,000	485,000
20231006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번길 ** ***호 (내동, 블루시티 트리가)	140,000,000	
20231105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번길 ** ***실 (부원동)	2,000,000	300,000
20231105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번길 ** ***실 (부원동)	2,000,000	250,000
2023112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 ***동 ***호 (외동, 한국*차아파트)	20,000,000	420,000
2023112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번길 **-*-* ***실	70,000,000	190,000
2023120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번길 **-*-* ***실	2,000,000	290,000
20231228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번길 **-*-* ***실	30,000,000	200,000
20231106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번길 ** ***호	2,000,000	280,000
20231016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 ***동 ***호 (대청동, 부영아파트*단지)	20,000,000	447,000
20231109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410,000
20231118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로 ** ***동 ***호 (삼문동, 젤미마을 부영아파트)	5,000,000	263,000
20231011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800,000	410,000
20231106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97,000
2023120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동 ***호 (봉황동, 봉황역e편한세상아파트)	240,000,000	0

※ 문의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담당자 ☎ 055-330-4318